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공공분양주택	비규제지역	대전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년 (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실질적 전매는 가능함)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3.07.(금)	2025.03.12.(수)	2025.03.17.(월)	2025.03.18.(화)~ 2025.03.19.(수)	2025.03.27.(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트리플시티엘리프.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사이버 건본주택(<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시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3.07.(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08**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7.(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788**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3.12.(수)	2025.03.17.(월)	2025.03.18.(화)~2025.03.19.(수)	2025.03.27.(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건설산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2.11.25.(금))**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간(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실질적 전매는 가능함)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총 93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 부부	계
2025930008	01	084.9736A	84A	84.9736	25.5777	110.5513	66.3419	176.8932	56.4105	1	1	1
	합 계										1	1

■ 공급금액 (단위: 원)

약식표기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5.06.20.	입주시(30%)	
84A	205	703	147,188,000	319,401,000	466,589,000	46,658,900	279,953,400	64,976,700	75,0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205	703	2,819,000	281,900	2,537,1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공사내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품목 현황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205	703	29,150,000	2,915,000	26,235,000	시스템 에어컨[삼성]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주방 스타일업 B 드레스룸 스타일업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수납가구[LG] 식기세척기[LG] 스마트 복합환풍기[힘펠] : 공용욕실, 부부욕실

※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시공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대전도시공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대전도시공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07.) 현재 공급유형별(신혼부부)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p> <p>-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p>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p> <p>*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p>-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p>*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p>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1-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1-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1,830천원 이하	45,63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5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07.)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1.01. ~ 2025.03.31.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소득기준

<표2>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원	17,156,176원	18,062,096원	19,466,172원	20,870,248원	22,274,324원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원	12,009,32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15,592,02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원	12,867,132원	13,546,572원	14,599,629원	15,652,686원	16,705,74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원	18,013,985원	18,965,201원	20,439,481원	21,913,760원	23,388,04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원	18,871,794원	19,868,306원	21,412,789원	22,957,273원	24,501,756원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입주자선정 제한 및 해당 주택 무순위공급 대상으로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 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3>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6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

6-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녀(태아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6">소득금액</th> </tr> <tr>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30% 이하</td> <td>9,366,906원</td> <td>11,151,514원</td> <td>11,740,362원</td> <td>12,653,012원</td> <td>13,565,661원</td> <td>14,478,311원</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200% 이하</td> <td>14,410,624원</td> <td>17,156,176원</td> <td>18,062,096원</td> <td>19,466,172원</td> <td>20,870,248원</td> <td>22,274,324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완화 기준은 "표1-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2-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원	17,156,176원	18,062,096원	19,466,172원	20,870,248원	22,274,324원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원	17,156,176원	18,062,096원	19,466,172원	20,870,248원	22,274,324원																								
당첨자 선정방법	<p>■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p>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당첨 이후 청약자격 확인서류 제출시 예비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 바람데 신청자가 제출한 예비 배우자의 내역은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본인 및 배우자)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습니다.
-----------	--

7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청약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7.(월) ~ 2025.03.26.(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문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1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able>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7.(월) ~ 2025.03.26.(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1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3.17.(월) ~ 2025.03.26.(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3.1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서약서	본인	• 계약시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계약시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당 사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당첨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0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계약시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	위임장	- • 계약시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0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계약주소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3.17.(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5.03.27.(목) 10:00 ~ 17: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건설산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대전도시공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자명 예시 : 201동 404호 계약자 홍길동 → '2010404홍길동'

※ 계약 체결 시 입금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대전도시공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좌입금(입금자명 예시 : 201동 404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404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입금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11 설계관련 유의사항 등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도안 갑천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기타 외부인의 통행 등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갑천호수공원 및 공원 주차장이 단지 남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 및 주차장에서 소음, 차량 매연,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유치원용지, 연립주택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도안 갑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내 및 지구 인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편의시설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안 갑천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사업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기존학교 과밀로 신설 예정이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지하수위 조절을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일정의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펜스 또는 조경(울타리 등)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사인물,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망 침해 및 조명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미관 지장,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고층 빛 반사가 발생 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타 설비와의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재배치하여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 발코니 외부에는 몰딩 등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포함·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진입됨.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사용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조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여건을 확인 하신 후 청약에 임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시 경계(확장)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각각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대지 일부(주차입구 및 차로 등)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창호가 입면분할방식으로 시공되어(발코니 확장 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 및 비상차량의 단지 내 이동시에는 보도를 혼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에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세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동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산책로, 부대복지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조명등, 출차주의등, CCTV 등에 의한 소음 및 조명 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CCTV는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지하주차장, 주민복지시설, 옥외 등의 주요 위치에 설치되며,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 등에는 무선AP가 주요위치에 설치되며, 공용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본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는 1,876대(장애인주차 58대 포함)이며 1세대 당 약 2.0대임.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 커뮤니티 시설 인근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특성상 지하주차장,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설비와 설비운영을 위한 배선, 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시설(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동 지하PIT에는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유지관리 상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A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냄새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진출입시 진입구간의 교차로의 특성상 통행 시 병목현상 등에 따른 지체현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 승하차시 회차를 해야함.
- 본 아파트는 친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일부 상가주차를 제외한 단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은 비상차량을 위한 동선만 계획되어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5동·206동·207동·208동·214동·215동은 인근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접하고 있어 차량전조등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3동·204동·206동·212동·214동·215동은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11동과 213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가 단지 내에 설치됨.
- 세대 전기용 세대분전함은 침실 또는 알파룸에 설치되고, 통신용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내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통신·소방 기구류의 마감재에 대한 제품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201동 지붕에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의거하여 202동·204동·207동·212동·214동 지붕, 지하1층 202동 통신실, 203동 통신실, 204동 통신실, 207동 통신실 등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요위치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 및 안테나가 설치예정이고, 이동통신 품질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재활용창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과 수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기 바람.
- 단지 내 조경계획(수목식재, 수경시설, 운동시설, 휴게공간, 조형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과정 등에 따라 위치, 재료, 형태, 색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밴드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음.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보안등, 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비상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외벽마감재 시공상 외부창호의 크기가 조정될 수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발생 및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 동별·향별·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11동, 215동은 119A타입과 122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출발코니가 설치되어 하부세대에 음영, 상부세대에 물고임이 발생될 수 있음.

• 215동 전면, 근린생활시설2 지붕은 일부세대의 전유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 시행중 설계 및 시공변경 관련사항

- 조감도, 전시모형 및 견본주택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자의 도산 등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시공 상의 개선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나 별도 통보없이 동급 이상의 품질과 유사색상 및 무늬를 가진 동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환기용급배기구, 전등, 콘센트, 통신단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주방기기, 욕실용품, 각종 기구류 등은 본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 유상읍선등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오·우수용 선흡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및 피난공간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흡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거 안방 발코니에 피난공간이 설치되며, 피난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경보음(해당세대, 하부층세대, 방재실)이 울리게 됨. 피난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장애물을 적치하여 비상 시 해당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경 단지계획은 건축구조물의 완성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설계를 재정비하므로,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조감도·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 크기 또는 장내부 깊이가 축소되거나 천장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피난공간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내부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주택형유상읍선에 따라 변동)에 매립하여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으로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은 벽걸이형으로 설치됨.
- 월패드, 욕실폰의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KT일반전화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스피커폰 방식으로 음질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방TV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 네이버 CLOVA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원격제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원패스 시스템은 입주민의 스마트폰(핸드폰) 사양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무선AP는 통신기기의 사용위치에 따라 전파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위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 예방하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각 세대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외부에 접하는 발코니 천장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장고가 낮음.
- 각 세대 주방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 주방 싱크대 인테리어 공사 시 계약자는 자동식소화기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사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성능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X 기타 사항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성능부분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 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등급	1.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신청자 : 대전도시공사
3.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의 음차단성능	★★★★
2. 중앙층의 음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파도면 지하개발 지역	-
3. 토양사 침투·성토양(배양기·흙쌓기용 한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개념에너지 이용	★★★★
8. 지면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친화적 제품(EPPD)의 사용	★★
11. 파편소 제거의 사용	★★
12. 파편소환 제거의 사용	★★
13. 유해물질 차단 제거의 사용	★★
14. 녹색건축가계의 적용 비율	★★★★
15. 폐해물 자원화율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저하수 이용	★★★

라.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필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향 녹지축	★
22. 생태학적 회복	★★★★
23. 생물다양성(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시설 확보	-
26. 단열제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파견가주와와 파견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생활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차량과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제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홍내트릭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원 콘센트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재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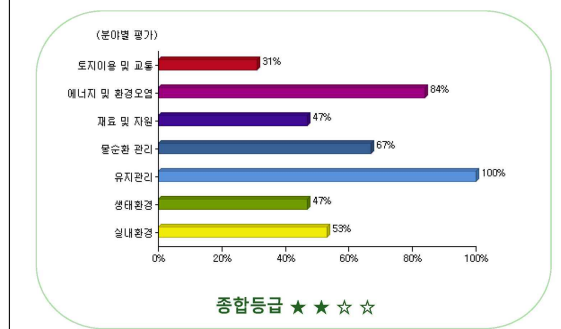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 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인증번호 : G-SEED-P-2022-1185-5
건축주 : 대전도시공사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5.10.31.	유효기간 : 2022.10.25. ~ 시험승인일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인증등급
연면적 : 199,325.5443㎡ (별기연면적: 198,659.8928㎡)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건축사사무소(주), 푸시비서디자인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 2021-66호, 인준기준 운영세칙(2021.11.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2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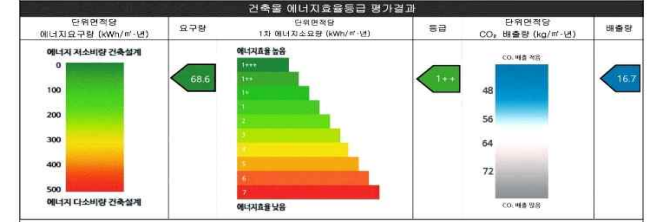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인증번호 : 22-주-에-1+-0052
준공연도 : 2025.10.31	별기자 : 여천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문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99,325.544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건축사사무소(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난방	29.6	38.2	6.5
급탕	30.7	37.4	6.2
조명	8.3	5.7	2.7
합계	68.6	84.1	16.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 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비고
건축비	공사비	토목	
		택지매입원가	150,020,480
		기간이자	1,759,456
		필요적 경비	548,333
		그 밖의 비용	10,066,563
		계	162,394,832
건축비	공사비	토공사	14,463,433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1,739,516	
			석축공사	-	
			우수, 오수공사	2,802,044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4,410,17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0,490,507	
			부대시설공사	2,821,538	
			공통가설공사	7,321,867	
			가시시설물공사	1,647,419	
			지정 및 기초공사	37,780,835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62,782,084	
			용접공사	-	
			조적공사	3,789,065	
			미장공사	3,185,010	
			단열공사	2,745,700	
			방수, 방습공사	3,294,841	
			목공사	8,054,055	
			가구공사	10,067,568	
			금속공사	7,468,306	
			지붕 및 환통공사	585,748	
			창호공사	2,313,708	
			유리공사	332,412	
			타일공사	2,745,700	
			돌공사	2,599,261	
			도장공사	2,617,567	
			도배공사	1,665,724	
			수장공사	494,227	
			주방용구공사	13,267,222	
			그 밖의 건축공사	439,313	
			급수설비공사	632,287	
			급탕설비공사	547,982	
			오수, 배수 설비공사	1,201,346	
			위생기구 설비공사	5,427,135	
			난방설비공사	6,744,402	
			가스설비공사	1,975,900	
			자동제어설비공사	289,797	
			특수설비공사	6,828,709	
			공조설비공사	-	
			전기설비공사	23,583,431	
			정보통신공사	9,477,945	
			소방설비공사	12,883,313	
			승강기공사	3,240,473	
			일반관리비	6,121,861	
			이윤	3,670,649	
			계	304,550,076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설계비	3,471,215
	감리비	1,982,339
	일반분양시설경비	5,308,565
	분담금 및 부담금	4,490,715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4
	계	15,252,85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756,180
합계		514,953,946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택지비 가산비	12,374,353,729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참조
건축비 가산비	32,756,180,92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 택지이자	재산세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부담금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 증고 증가	법령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금액	12,374,353,729	1,759,456,629	548,333,450	5,403,160,560	3,176,670,695	1,486,732,395	32,756,180,920	2,112,063,122	9,675,068,517	3,102,896,140	5,703,046,440	5,739,087,900	4,549,906,891	918,347,430	955,764,480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역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갑천지구 2BL	대전도시공사 (314-82-03732)	계룡건설산업 (주) (314-81-07954) 파인건설 (주) (314-81-96613) 대국종합건설 주식회사 (249-86-01011) 신도종합건설 (주) (314-81-06289) (주) 동방종합건설건축사무소 (314-81-37818)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301-81-03573) 선우건설주식회사 (305-81-86111)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

■ 분양문의 : 070-4470-804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